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변경

-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 ▶ 2019년 12월 31일까지(안 제18조)

4. 검토의견

가. 개정개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관련 법령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 변경
 - ▶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안 제1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설정
 - ▶ 2019년 12월 31일까지(안 제18조)

금번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09.4)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 공포 후 10년 3개월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존속기한 조항인 제18조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은 2005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에 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